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목 차 contents

I	가이드 제작 목적 및 구성방향	4
	1. 목적	4
	2. 구성방향	5
II	보육활동 침해 행위	6
	1. 폭행·상해 행위	6
	2. 협박 행위	9
	3. 명예훼손·모욕 행위	10
	4. 불법정보유통 행위	12
	5. 업무방해 행위	14
	6.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15
	7.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17
III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18
IV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	27
V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도움 기관	28

I 가이드 제작 목적 및 구성방향

1. 목적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호자-교사간 소통시 보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교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
- 이에,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교사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시함

보육활동이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대소집단·개별 활동, 놀이,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함

보육활동 침해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근무기관의 보육교직원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중 자율적 교육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말함

2. 구성방향

1 현장 기반 보육활동 침해 유형 분류

- ▶ 어린이집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분류

2 현장 기반 보육활동 침해 사례 제시

- ▶ 보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교사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구성

3 보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법령 및 정보 제공

- ▶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대응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정보를 함께 제공함

4 대응 방법과 상호작용 예시를 함께 제시

- ▶ 보육활동 침해 상황 대응에 익숙지 않은 보육교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대응 방법과 상호작용 예시를 함께 제시함

5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 제시

- ▶ 보육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 원장,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실천해야 할 기본지침을 함께 제시함



II 보육활동 침해 행위

1. 폭행·상해 행위

[폭행] 보육교사의 신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상해] 유·무형, 직·간접 수단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 기능에 피해를 주는 행위

참조: 교원지위법 제15조, 형법 제25장

폭행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재원생 중 발달 지연 및 ADHD 증상이 의심되어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관련 정보 및 지원 사항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보호자는 아이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안내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의 먹살을 잡아 흔들고 욕을 했어요.

출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례 재구성

기타 예시

- ▶ 보호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하여 보육교사와 상담 중에 먹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 아동학대를 의심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난입하여 보육교사의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 보육교사와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 ※ 보육교사에게 대면(전화 통화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신체의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는 물리적 힘에 해당하므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음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상해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아동학대를 의심한 재원생 보호자가 무단으로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교사를 폭행하고 어린이집 내 집기를 파손했어요. 이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대다수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출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례 재구성

기타 예시

- ▶ 야구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교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경우
- ▶ 교사에게 유·무형, 직·간접 수단을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 등)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잠깐! 미리 알아둬시다

「형법」에 따른 상해·폭행죄 처벌

- ✔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 19호(불안감조성)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에 나타난 폭행 판단기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잠깐! 미리 알아둬시다

상해 인정 기준

- ✔ **정신적 건강 훼손도 포함**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건강 훼손 또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 장애에는 육체적 부분 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도 포함되므로 정신 건강의 훼손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도 상해가 될 수 있음
- ✔ **일시적 불안·스트레스 미포함**
 일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가해행위에 대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그 자체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음
- ✔ **의학적 소견 필요**
 신체의 건강 훼손, 사람의 생리적 기능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서를 주요 근거로 삼아 이루어짐

상해사고 보상 범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상해 공제’에 가입한 경우,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 또는 보육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90%를 2,000만원 한도에서 보상



2. 협박 행위

언어나 행동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

참조: 교원지위법 제15조, 형법 제30장

협박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 ▶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는 원아가 있어 식판을 정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서는 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출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례 재구성

기타 예시

- ▶ 아동학대 행위가 명백히 아닌데도 형사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보육교사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
-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보육교사에게 터무니없이 큰 금전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집을 떠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경우
- ※ 폭언의 경우, 단순한 욕설을 넘어 보육교사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잠깐! 미리 알아둬시다

「형법」에 따른 협박죄 처벌

- ✔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타인을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협박죄 성립 요건

- ✔ **공포감** 해당 행위로 두려움이나 압박감을 느낌
- ✔ **해악 고지** 통보를 하는 방식은 글이나 직접 언급, 명시, 묵시 등 제한이 없으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위협을 보였다면 모두 포함됨
- ✔ **미필적 고의도 인정** 실제로 협박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고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협박에 해당됨
-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3. 명예훼손·모욕 행위

[명예훼손]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보육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육교사의 명예나 존엄성을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비난, 조롱, 농락, 모욕적 언어 사용 등)

참조: 교원지위법 제15조, 형법 제33장

명예훼손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한 재원생 학부모가 보육교사의 근태상황을 파악한 후 정확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다른 보호자들에게 유포해서 담임교사가 다른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많이 힘들어했어요.

출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례 재구성

기타 예시

- ▶ 다른 부모들에게 "OOO교사가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 학부모들 모임에서 "OOO교사 인스타그램 보니까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 경우

모욕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재원생 아버님께서 사전 연락도 없이 평소 하원시간보다 1시간 일찍 데리러 오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아이 하원 준비를 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아이가 늦게 나왔다고 화를 내시며 교사에게 XXX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기타 예시

- ▶ 원장에게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사를 요구한 경우
- ▶ 원장에게 교사의 카톡 프로필이 교사답지 못하다며 징계를 요청한 경우
- ▶ 다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선생님 보조교사죠.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은 있으세요?"라고 묻는 경우

잠깐! 미리 알아둡시다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처벌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 ①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
- ② **공연성** 해당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함
- ③ **사실의 적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표현하고,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해야 함
※ 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515 판결 참조

'형법'에 따른 모욕죄 처벌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판단 근거

- ✔ 사회적 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모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 간의 1:1 대화는 해당하지 않음)
- ✔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그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는 별명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됨
- ✔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는 않음
※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4. 불법정보유통 행위

컴퓨터, 전화, 이메일, SNS(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참조: 교원지위법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불법정보유통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저는 작년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뛰다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제가 배식 중이라 다른 교사가 아이를 안아주었음에도 담임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로 결론지어 ○○지역카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였습니다. 결국 5개월 만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이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사실과 관계없이 아동학대 교사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출처: 국민청원 사례

기타 예시

- ▶ 보육교사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 ▶ 인터넷 맘카페에 "OO 어린이집 OO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 ▶ 보육교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잠깐! 미리 알아둬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형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유통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단 기준

- ✔ 반복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에 따른 위반 여부는 반복성에 의해 결정됨. 즉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전화·이메일·SNS 등을 통해 1회성으로 발송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동일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참조

5. 업무방해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참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형법 제34장 제314조

업무방해 사례

현장 사례

- 한 재원생이 어린이집 외부에서 다른 원아를 때린 상황이 발생했어요. 피해 원아 보호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폭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CCTV 열람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며 업무를 방해했어요. CCTV확인 결과, 어린이집 내부에서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원아 모두 퇴소하고 담임교사도 퇴사했어요.
- 한 재원생 학부모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화 및 키즈노트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방해를 해서, 교사들이 힘들어하여 사직서를 내려고 했어요

출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례 재구성

잠깐! 미리 알아둬시다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 처벌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 ✔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로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
- ✔ 위계나 위력(폭행, 협박, 사회적 지위나 권세 등에 의한 압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함
- ✔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해당됨

※ 대법원 2005.4.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도 16718 판결 참조

6.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정당한 보육활동 참여 범위를 넘어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는 행위

참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보육활동 부당 간섭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 저는 만 3세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육과정이 놀이중심으로 바뀌면서 "너무 놀고만 있는 것 아니냐,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안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힘들어요.
-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전화하여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보통인데도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으니 야외 활동을 하지 말고, 어린이집 안에서 놀이를 시켜 달라"고 한 뒤, 1시간 후 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해당 학부모는 자주 어린이집에 전화하고, 요구에 대한 반응이 곤란하다고 하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경력, 나이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의 반 배정을 원하는 000교사, 000원아로 구성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어요.

출처: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례 재구성



기타 예시

- ▶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보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 ▶ 보호자가 아이가 좋아하는 특정 음식을 별도로 전달하며 자신의 아이에게만 제공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 보육활동 중 전화·문자·SNS 등으로 아이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 프로그램 활동 사진, 급·간식 사진 등 아이의 하루 일과를 세부적으로 촬영하여 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잠깐! 미리 알아둬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정당한 보육활동 참여 범위

-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반 제안 및 건의하는 것은 보육활동 부당 간섭으로 보기 어려움
-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따라 보호자가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해 참관을 요청하는 것은 보육활동 부당 간섭으로 보기 어려움



7.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사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참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보육활동 무단 촬영·녹음·배포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 ▶ 11년차 어린이집 교사인 임모씨는 "최근 옆 반 학부모 중 한 명이 아이 치마에 주머니를 달아서 녹음기를 들려 보냈다"며 "당황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학부모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출처: 뉴시스 "요새 세상이 험해서"... 어린이집 '녹음기' 등원 논란 (2023.6.13)

기타 예시

- ▶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사의 음성을 녹음하여 이를 무단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잠깐! 미리 알아둬시다

무단 녹음에 따른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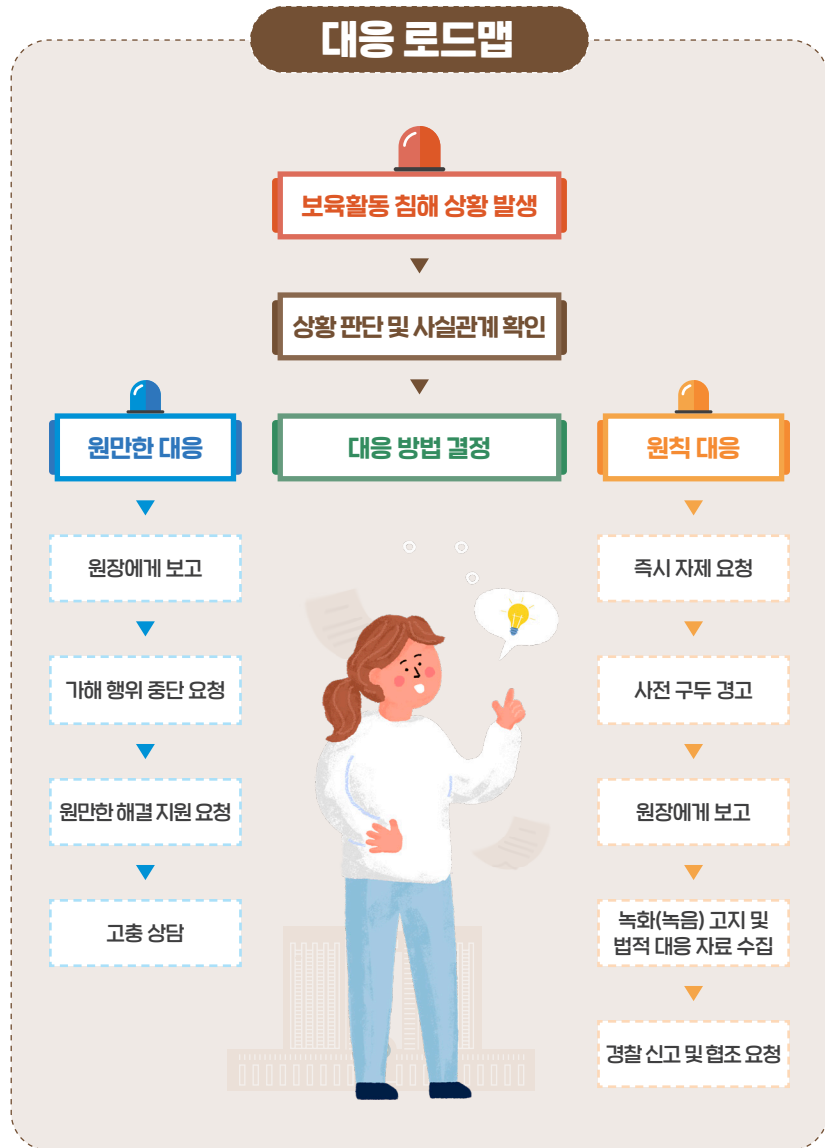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판례에 나타난 무단 녹음 위법성 판단 기준

- ✔ 사람의 음성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등이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함
- ✔ 그러나 아동학대 현장과 같이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위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참조

III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이럴때는 이렇게! 저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1) 상황판단 및 사실 관계 확인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에서 해당 유형 선별

<보육활동 침해 행위>

- 폭행·상해 → 6p 참조
- 협박 → 9p 참조
- 명예훼손·모욕 → 10p 참조
- 불법정보유통 → 12p 참조
- 업무방해 → 14p 참조
- 보육활동 부당 간섭 → 15p 참조
-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 17p 참조

▶ 해당 유형에 제시된 **점검! 미리 알아둡시다**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보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

2) 원장에게 보고

- ▶ 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대면하여 침착하게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 ▶ **점검! 미리 알아둡시다**에 제시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상황은 보육활동 침해 행위 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을 전달
- ▶ 더불어 해당 보육활동 침해 건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음을 전달

3) 가해 행위 중단 요청

- ▶ 보육활동 침해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대면하여 침착하게 발생했던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상기시킴
- ▶ 이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 OO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삼가도록 요청

"부모님, 일전에 아이 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중에 감정이 격해지셔서 제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엄연히 폭행에 해당하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에서는 교사의 자율적인 보육활동 운영이 중요합니다. 만일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경우, 교사는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영유아·놀이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영유아들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집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러한 행동을 삼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예시

4) 원만한 해결지원 요청

- ▶ 교사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안 마련 요청 (예. 특별휴가, 보호자와 분리 조치 등)

"원장님, OO 아버님께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OO 아버님을 직접 만나 그러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정중히 사과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추후에도 모욕감을 주거나 협박적인 발언을 지속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시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원장에게는 ① 보호자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조치 ② 보육교사에게 건강장해가 발행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조치 ③ 보육교사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을 때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가 있음

5) 고충상담

- ▶ 보육활동 침해 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요청

"현재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 아버님께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지만, 어린이집이 시끄러워서 좋을 일 없으며 저에게 그냥 넘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참고

한국보육진흥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 서비스

① '한국보육진흥원, 마음성장프로젝트 심리지원 프로그램'

• 마음성장 프로젝트란?

보육교직원이 일상과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스스로의 마음상태를 점검(자기이해 테스트)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자기이해 테스트]

- 보육교직원으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추천을 위한 검사(총 40문항)

※ 마음성장프로젝트 홈페이지(mindup.kcpi.or.kr)을 통해 검사 실시



②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자가검진'

• 정신건강 자가검진이란?

정신건강 전반에 대해 위험 영역 선별을 목표로 하는 1차 검진과 선별된 영역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가능한 2차 검진으로 구성

[정신건강 자가검진]

국가정신건강포털(mentalhealth.go.kr)을 통해 자가검진 실시

- (질환별 검진항목)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정신장애 등

※ 자가검진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검진자 정보필요(입력 정보는 수집되지 않음)

이럴때는 이렇게!

저는 원칙대로 대응하고 싶어요.

1) 즉시 자제요청

- ▶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즉시 당사자인 보호자에게 단호한 어조로,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됨을 고지하고 해당 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요청

2) 사전 구두 경고

- ▶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즉시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법령에 근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함
- ▶ 더불어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함
- ▶ 추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기를 이용하여 녹화(녹음)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함

"부모님의 지금 언행은 저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위법행위로서 관련 법령(형법 제311조 모욕)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화(녹음)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즉시 보호자에게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기기를 이용하여 녹화(녹음)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고, 바로 녹화(녹음) 실시(p.25 녹음·녹화 시 주의사항 참고)

3) 원장에게 보고

- ▶ 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대면하여 침착하게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 ▶ **잠깐! 미리 알아둬시다** 에 제시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상황은 보육활동 침해 행위 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을 전달
- ▶ 더불어 해당 보육활동 침해 건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



예시

"원장님, 부모님께서 제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시고,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일전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나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정신적 불안까지 겪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4) 녹화(녹음) 고지 및 법적 대응 자료 수집

- ▶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보호자에게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녹화(녹음)하겠습니다"라고 고지 후 녹화(녹음) 실시
- ▶ 스마트폰, 녹음기, CCTV 등의 기기를 이용해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예. 녹음 파일, 문자 내용, 목격자 진술서, 보육활동 침해 행위 기록서 등)



예시

"부모님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여 바로 녹화(녹음)를 진행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형법 제21조에 의거, 부모님께서 동의하시지 않더라도 녹화(녹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 상에 올린 게시글 등은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화면캡처, 촬영 등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 녹음·녹화 시 주의사항

- 사전 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사전에 녹화(녹음)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해야 함.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며, 형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화(녹음) 시도 필요
- 사전 고지 후 동영상 촬영이라도 상대방의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얼굴 정면이 들어가지 않도록 촬영 필요

※ 법적 대응을 위해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기록으로 남길 경우

-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됨. 예를 들어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 폭행이 발생했다면, 폭행 가해자(who), 폭행 시간(when), 폭행 장소(where), 폭행 내용(what), 폭행 발생 원인(why), 폭행 사건 발생 이후 경과(how) 등을 정확히 기재해 두면 추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

5) 경찰 신고 및 협조 요청

- ▶ 112(긴급신고) 혹은 110(비긴급 신고)으로 신고전화
- ▶ 경찰에게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가감 없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적 조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 신고 이후의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 요청
- ▶ 불법정보유통의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신고 가능
 - 사이버 안전지킴이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접속하여 신고



예시

"안녕하세요. 저는 △△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000교사입니다. 지난 0월 0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상담 중에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 및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형사방어비용 특약

• 형사방어비용 보상 손해의 범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동'에게 발생한 사고로 선생님들이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신고됨으로써, 형사절차(경찰·검찰수사, 재판)가 개시될 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도내에서 보장

[보장한도]

→ (경찰/검찰에서 수사하는 단계) 1인당 200만원까지 실비보상

→ (경찰/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 재판하는 단계) 1인당 1심/2심/3심 재판 각 500만원까지 실비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범위

- 아동학대로 '유죄'판결(고의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측과 형사적으로 합의할 경우 형사합의금 보상대상 제외

• 보상 업무 절차



V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

구분	내용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자율적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믿고 지원합니다. • 보호자에게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 보호자로 인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 보육교사가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이 되어 줍니다. •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및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로서 전문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자와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 영유아에게 최선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로부터 정당한 보육활동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하거나 요구를 받을 경우, 정중하게 수용할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 영유아에게 최선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는 자격을 갖춘 보육전문가임을 알고 존중합니다. • 자녀양육의 주책임자는 보호자임을 알고, 영유아 발달을 위해 보육교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상호 협력합니다. • 보육교사의 자율적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믿고 지원합니다. •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정적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시간 이외(퇴근 시간 이후 혹은 주말)에는 전화, 문자 보내기 등으로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영유아들과 함께하는 보육활동 시간에는 문자, 전화 등으로 연락을 자제합니다. 보육활동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을 한 후, 정해진 일정에 상담하도록 합니다. • 인터넷 게시판, 단체문자,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거나 보육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VI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도움 기관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1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1331
	(사업내용) -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민 등이 조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조사,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권고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 •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 안내 • 장애, 성별, 나이, 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담		
2	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
	(사업내용)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연계 - 어린이집 유형과 보육교직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상담프로그램 안내) 서울(02-772-9814~8) 부산(051-866-0536~7) 대구(053-421-2346~7) 인천(032-431-4606~9) 광주(062-714-3636) 대전(042-721-1256~7) 울산(052-266-4173~4) 세종(044-865-0561) 경기(031-258-1485) 경기북부(031-876-5767~8) 강원(033-244-2660,4660,8660) 충북(043-239-8777~8) 충남(041-634-6234~9) 전북(063-276-8080~1) 전남(061-285-5455~6) 경북(054-655-9939) 경남(055-213-2471~5,7) 제주(064-746-2211)		
3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www.emotion.or.kr	02-722-2525
	(사업내용) - 서울시에서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대상 심리상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운영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4	서울 심리지원센터 (서울 3개소)	센터별(동남/동북/서남) 상이	
	(사업내용) -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직장인을 대상으로 센터 방문 개별상담 무료 제공 - 직장, 대인관계, 이성 및 부부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대상 상담. -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대상 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강의 실시)		
5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sctrighths.com	02-772-9814~9
	(사업내용) -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상담, 노무 상담 무료 제공		
6	경기도 인권센터	www.gg.go.kr/humanrights	031-120
	(사업내용) - 경기도 소속기관 및 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상담 제공 - 인권침해 신청사건 조사(직권조사 개시), 결정 및 시정 권고		
7	정신건강복지센터	mentalhealth.go.kr	1577-0199
	(사업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기초 인프라로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등 총 261개소 설치하여 운영		
8	어린이집안전공제회	www.csia.or.kr	1600-061
	(사업내용)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 보육교사가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신고됨으로써, 형사절차(경찰·검찰수사, 재판 등)가 개시될 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도내에서 보장 (무혐의, 무죄에 한해 보상) ※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를 보상하기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 후 공제로 납부 필요		